

의안번호	2125751
의 퇴 인	서삼석의원
회 답 일	2023. 12. 20.
추계번호	23B4973

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6억 8,700만원, 2029년 32억 3,900만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99억 1,600만원(연평균 19억 8,300만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안 제14조제1항제2호) 및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 특례(안 부칙 제2조) -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대	687	1,375	1,996	2,618	3,239	9,916	1,983

주: 행정비용 1.7% 포함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14조제1항제2호(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촌공동체 유지와 활성화 등을 위하여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이하 “선정 신청일”이라 함) 현재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인 자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음(제1항) 1. (생 략) 2.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른 양식업의 허가 또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가. 선정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어업경영 관련 정보가 등록되어 있을 것 나. 제16조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에 관한 약정 체결 전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에 사용하는 어선, 어구 및 시설물을 매각할 것	
2	안 부칙 제2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 특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제1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신청자의 연령조건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함(안 부칙 제2조) * 현행법(법률 제19010호)과의 정합성·안정성을 고려하여 개정안 부칙에서도 신청자의 연령조건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하는 특례규정을 두는 것임 부칙 <법률 제19010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 특례)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관한 제14조제1호의 개정규정 및 같은 조 제2호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생략) 2. 제14조제2호의 신청자의 연령조건을 만 65세 이상 만 80세 미만으로 한다.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
1	안 제14조제1항제2호(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 현행 어촌계원 외에도 <u>내수면·어선어업, 양식업 등 허가를 받은 고령의 어업인이 어선이나 어구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경영이양 지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u>
2	안 부칙 제2조(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 특례)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개요

- 현행법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이하 “경영이양직불제”라 함) 시행중¹⁾
 - (시행일) '21.3.1.(최초)
 - (목적)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사회 활성화 도모
 - (참여대상)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
 - * 계원 자격 유지 기간 5년 이상
 - ** 만 80세 미만까지 확대(2023.4.1.~2026.12.31.까지 한시적으로 신청 연령 확대, 「수산직불제법」 부칙 제2조)
 - (지급기준) 직전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수입)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표 2]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기준

소득구간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2,400만원 초과
지급액 (연/월)	연 120만원(정액)/ (월 10만원)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	연 1,440만원(정액)/ (월 120만원)

1) [참고자료]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개요 참고

- 2021년 제도 시행 이후 경영이양직불제 예·결산 현황은 다음과 같음
- (재정부담주체) 전액 국비(100%)

[표 3] 경영이양 직불금 예·결산 현황: 2021~2024년(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1		2022		2023		2024(안)
		예산	결산 (실집행)	예산	결산 (실집행)	예산	결산(추정) (실집행)	예산안
수산공익직 불제 (3460-310)	경영이양 직불	3,966	466 (50)	466	466 (218)	500	254 (237)	466
	집행률 (실집행률)	—	11.8% (1.3%)	—	100% (46.8%)	—	50.8% (47.4%)	—

주: 경영이양 직불금의 약 1.7% 행정비 포함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나.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안 제14조제1항제2호) 및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시행 특례(안 부칙 제2조)—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대

- 개정안은 어촌계원이 아니더라도 은퇴를 희망하는 고령의 어업인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급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가 예상됨

- 개정안은 어촌계원이 아니더라도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는 고령의 어업인이 어선이나 어구 등을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경영이양 직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허가어업 종류) 「내수면어업법」 제9조에 따른 어업 허가,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허가(어선어업),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허가,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 허가

— (기타 요건) 어업경영체 등록 및 어선, 어구 및 시설물 매각 필수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현행법은 경영이양직불금 지급대상자가 어촌계원일 것 등을 요구하고 있어 신청률이 저조함²⁾

2) 참여 저조 사유는 [참고자료]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개요 참고

□ 본 추계는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를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추계

○ (지급대상자 수)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허가어업(내수면어업, 어선어업, 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 종사자로서 매년 약 52명 규모의 지급대상자가 발생(순증)할 것으로 예상

$$\begin{aligned} \text{지급대상자 수} &= \text{연간 전체 허가어업 종사자}(1,800\text{명})^a \times \text{경영 이양을 받는 자} \\ &\quad \text{비율}(28.6\%)^b \times \text{경영이양 비율}(10\%)^c \\ &\approx 51.48\text{명} \end{aligned}$$

a) 최근 3년간 연령조건(65~79세)에 부합하는 어선어업 허가어업인(약 1만 5천명) 중 어선 매도 후 허가권을 승계한 경우는 연평균 1,395명³⁾이며, 이를 전체 허가어업(내수면어업, 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 종사자로 환산시 1,800명 (=1,395명÷77.4%(어선어업 비중))으로 예상

b) 경영 이양을 받는 자 비율: 어가인구 중 60세⁴⁾ 이하 인구의 비중 28.6%

c) ①경영을 이양받는 자 연령 제한(60세 이하), ②직계 존·비속에 경영이양 시 직불금 지원 제외, ③직불금 수령 시 영구적인 어업 불가(은퇴) 의무에 대한 수용력 등을 고려하여 10% 규모로 산출

— 이때, 경영이양 완료 후 직불금 수령 기간(6~10년간) 및 한시적 신청자 연령 조건 완화(상한 74세 → 79세/ 5세 증) 특례 종료 시점(2026.12.31.)을 고려할 때, 2027년도부터 매년 5명 규모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현황: 2021~2022년>

(단위: 명, 백만원)			
구분	2021	2022	합계
지급인원	6	13	19
지급액	22.8	175.2	198

주: 신규 지급대상('21년 6명, '22년 7명)은 연간 지급액을 월 단위로 환산하여 약정체결일 다음 달 15일부터 월 단위로 지급하고, 다음연도부터는 1월부터 12월까지, 약정체결 기간(최고 10년간) 연중 월 단위로 지급됨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3) ('20년) 1,398명, ('21년) 1,530명, ('22년) 1,257명

4) 법 시행령 제5조(경영이양 직접지불금의 지급요건 등) ① 법 제14조제3호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 자격 이양은 소속 어촌계의 총회 의결을 거쳐 신규로 소속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얻으려는 60세 이하의 어업인(이양하려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은 제외한다)에게 어촌계의 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해당 어촌계를 영구적으로 탈퇴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 4]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대상자 산출: 2025~2029년

(단위: 명)

	2025	2026	2027	2028	2029
당해연도 신규 지급대상자 (순증)	52	52	52	52	52
연령 조건 특례 종료에 따른 감소 인원(2027년~)	—	—	-5	-5	-5
합계	52	52	47	47	47
누적 인원	52	104	151	198	245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지급단가) 1인당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단가는 1,300만원으로 가정
 - 해양수산부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시 사용한 단가 적용
 - 이때, 추계기간 동안 지급단가는 변동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
 - (행정비) 경영이양 직불금의 약 1.7% 규모(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추계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를 확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총 99억 1,600만원으로 추계됨

[표 5] 경영이양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경영이양 직불금	지급대상자(누적) (A, 명)	52	104	151	198	245	—	—
	지급단가 (B, 백만원/명)	13	13	13	13	13	—	—
	지급액 (C=A×B, 백만원)	676	1,352	1,963	2,574	3,185	9,750	1,950
행정비 (D=C×1.7%)		11	23	33	44	54	166	33
합계 (E=C+D, 백만원)		687	1,375	1,996	2,618	3,239	9,916	1,983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V. 부대의견

- 본 추계는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산출한 것으로, 향후 실제 예산 편성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이현경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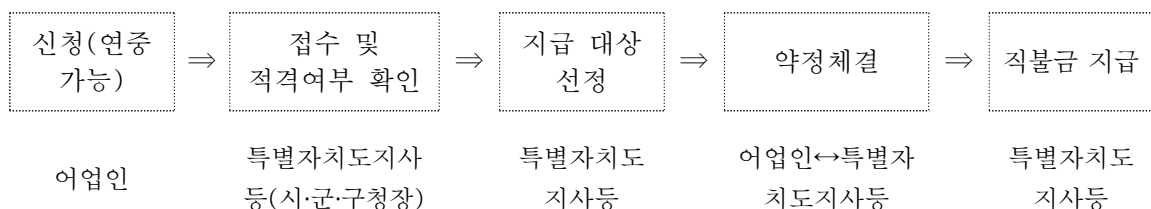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

- (시행일) '21.3.1.(최초) * '23.4.1.(일부개정)
- (목적) 어업 경영을 이양하고 은퇴하는 고령 어업인의 소득 안정과 젊은 후계 어업인 유입 촉진을 통한 어촌사회 활성화 도모
- (참여대상) 신청일을 포함하여 이전 10년 이상* 어촌계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만 65세 이상 만 75세 미만* 어업인
 - * 계원 자격 유지 기간 5년 이상, 만 80세 미만까지 확대('26년까지 한시 적용, 법률 부칙 제2조)
- (지급요건) 소속 어촌계 총회 의결을 거쳐 60세 이하의 후계 어업인에게 어촌계원 자격을 이양하고 어촌계 영구적 탈퇴
 - 소득증명을 위한 선정 신청년도 직전 3년간 어촌계 결산보고서 구비
- (지급기준) 직전 3년간 어촌계 1인당 평균 결산 소득(수입)을 기준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소득구간	200만원 이하	200만원 초과 ~ 2,400만원 이하	2,400만원 초과
지급액(연/월)	120만원(정액) / 10만원	1인당 평균 결산소득의 60%	1,440만원(정액) / 120만원

- (지급방식, 기간) 연간 지급액을 월 단위로 나눠 약정체결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매월 15일에 지급, 연령에 따라 최장 10년간*
 - * 만 65세~만 75세 → 10년간(균등), 만 76세~만 79세 → 9~6년간(연령별 차감)
- (지급절차) 지급대상 선정자를 대상으로 약정체결 후 직불금 지급



□ 참여 저조 원인

- ① 어업인 기대에 못 미치는 낮은 지급단가(어촌계원, 개인으로서의 어업소득 등 미포함)
 - 어촌계원 연평균 가구당 수산물판매액은 일반 어가의 146%인 30,754천원('16~'18년, 3년간)
- ② 신규계원에 대한 가입비 납부 부담, 거주기간 제한 등 어촌계 진입 장벽
 - 가입금(평균 534만원), 거주기간(평균 39개월) 등 가입조건을 설정한 어촌계는 전체 어촌계의 91%(1,867/2,044),
- ③ 어촌계의 고령화 심화로 구비서류인 결산보고서 작성·관리 미비 등
 - 최근 3년간('20~'22) 결산보고서 제출 어촌계 비율은 11.5%(236개/2,044개)임

□ 제도 시행('21.3.1.) 이후 예·결산 현황

<경영이양 직불금 예·결산 현황: 2021~2024년(안)>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	내역사업	2021		2022		2023		2024(안)
		예산	결산 (실집행)	예산	결산 (실집행)	예산	결산(추정) (실집행)	예산안
수산공익직 불제 (3460-310)	경영이양 직불	3,966	466 (50)	466	466 (218)	500	254 (237)	466
	집행률 (실 집행률)	—	11.8% (1.3%)	—	100% (46.8%)	—	50.8% (47.4%)	—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